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</u> <u>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<u>나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</u> <u>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</u> <u>각 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</u> <u>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</u> <u>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</u> <u>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(사</u> <u>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</u> <u>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</u> <u>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</u> <u>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</u> <u>00분의 35(수도권 외의 지역에</u> <u>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</u> <u>의 60)를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</u> <u>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</u> <u>재산세를 추징한다.</u></p> <p><u>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</u> <p><u>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</u> <u>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</u> <u>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<u>나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</u> <u>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</u> <u>각 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</u></p> </p>	<p><u>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</u> <u>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</u> <u>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</u> <u>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</u> <u>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</u></p> <p><u>가. 수도권(인구감소지역은 제</u> <u>외한다)에 소재하는 토지에</u> <u>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</u> <u>15를 경감한다.</u></p> <p><u>나. 수도권 외의 지역(인구감소</u> <u>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</u> <u>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</u> <u>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</p> <p><u>다.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</u> <u>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</u> <u>00분의 60을 경감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</u> <u>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</u> <u>· 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</u> <u>여 취득 ·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</u> <u>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</u> <u>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</u></p> <p><u>1.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</u> <u>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</u> <u>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</u> <u>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그</u></p>